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0.0. 공포, 00.0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가목 중 “풍수해”를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을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를 “풍수해, 지진재해”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풍수해의 예방, 풍수해보험”을 “풍수해 또는 지진

재해의 예방,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계 및 관리 업무의 위탁)”을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계 및 관리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 관련”을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관련”으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풍수해”를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로 보험목적물”을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로, “풍수해로 피해”를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피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으로 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 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대하여만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 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자격기준: 필수인원 6명(각 항목별 최소 기술인력 포함)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 수자원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또는 기상예보 기술사 2)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공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전공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해양공학기사, 기상기사, 정보처리기사 2)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 전산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풍수해보험법 시행령</u>	<u>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 <u>풍수해보 험법</u>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u> 」----- ----- -----.
제2조(보험목적물) 「 <u>풍수해보험 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 · 임 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 <u>풍수해 · 지 진재해보험법</u> 」----- ----- ----- ----- -----.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풍수 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u>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사업</u> ----- ----- ----- ----- ----- ----- ----- -----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다. (생략)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

1. -----

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나.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험,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보험, 풍수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② (생략)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

1. ---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 --- 풍수해, 지진재해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기간) -----

-----.

1. 2. (현행과 같음)
3.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보험을 가
 입·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생 략)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2. (생 략)
 3. 풍수해의 예방, 풍수해보험의
발전·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생 략)

제16조의2(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
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① 행
 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
 항에 따라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의3(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
 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의 예
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
의 위탁) ① -----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관련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
력 구비 조건)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
지도 -----

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
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
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
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
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
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
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
정되어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
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2. 풍수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
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
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
지원) ① -----

-----.

1. -----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2.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보
험목적물----- 풍수
해 또는 지진재해로 피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② (생략)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 3 및 별표에 따른 <u>풍수해보험관리지도</u>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풍수해·지진</u> <u>재해보험관리지도</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연 락 처	(044) 205 - 5356